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어 우 경 (魚羽慶)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4 중앙빌딩 302호

변호사 박 원 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 B/D 4층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청구 취지

“지방자치법 (1988. 4. 6.개정 법률 제4004호) 제65조(청원서 제출)는 헌법에 위
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1. 기본권리인 ‘헌법 제 26조 【청원】 ①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의 청원권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의 행복추구권

침해 원인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의왕시 의회에 지방자치법 (1988. 4. 6.
개정 법률 제 4004호) 제65조 【청원서 제출】 ① 地方議會에 請願을 하고자 하는
자는 地方議會議員의 紹介를 얻어 請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지방의회 소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 이유

1. 개 관

청구인 어우경 [redacted]은 [redacted]년 [redacted]월 이후 [redacted]년 [redacted]월 현재까지 거주하는 의왕시 시민입니다. 청구인은 평범한 회사원이면서 동시에 주거지에 인근해 있는 '모락산환경보전모임'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의왕시 의회에 2회에 걸쳐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위 지방자치법상 청원서 제출에는 의원 소개가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 있는 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거절로 인하여 청원서를 의왕시 의회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침해하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내손지역 노상, 노외 주차장 무료화에 관련한 청원서 접수거부

청구인이 청원하고자 한 내용은 내손지역의 노상, 노외 주차장 무료화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내손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과천개발에 이어 전원주택단지(주거전용) 개발을 1984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에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하여 주차장법에 의거 여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도 제40회 정기회(1995.11.25~12.29)에서 유료화하는 안건을 부의하여 조례를 통과하였습니다. 의왕시는 이 조례에 의하여 1996년 3월 1일부터 내손지역 주차장을 유료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손지역 주민들은 현수막 4종 15개를 지역 곳곳에 게시하는 한편 주차장무료화를 의왕시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청구인도 주민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99%의 주민들이 무료화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과 뜻을 같이하는 주민이 계속늘어났고 마침내 5백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은 1996년 11월 20일 주민들의 서명용지를 첨부하여 의왕시 의회에 위 청원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의회에서는 청원서를 발송한 저에게 "의사13130-192(199.11.22)호 소개의원 보완 요구"라는 제목하에 소개의원이 없이는 그 청원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반려서를 보내와 청구인은 1996. 12. 8 이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의왕시 의회 의원들 9명 모두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위 청원서의 소개의원이 되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직접 찾아가 부탁하였으나 하나같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3.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청원서의 소개 거부

청구인이 의왕시 의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청원하고자 하였던 것은 시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지나치게 큰 차이를 보여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습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의왕시민은 의왕시라는 행정구역에 살면서도 치안은 과천경찰서 및 군포경찰서, 소방업무는 군포소방서, 교육행정은 군포교육청, 세무행정은 안양세무서의 관할에 속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길은 행정구역을 생활권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를 담은 청원을 의왕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 청원에는 의왕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여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개의원이 없이는 청원서 접수가 반려된다는 사실을 안 청구인은 이 청원서의 소개의원을 구하기 위하여 의왕시 의회의원 9명 전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에 대해서도 어느 의원 하나 소개의원이 되어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1995. 6. 27 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던 의왕시 신창현시장과 도의원, 시의원들도 바로 이러한 주민들의 행정구역개편 요구를 잘 알고 이를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청원에 아무 의원도 소개하기를 거부하여 청구인과 1만여명의 청원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지방자치법 제65조의 헌법위반

우리나라 헌법 제26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청원법(1963.2.26 법률 제1283호)은 “헌법상의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 청원권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5조는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바로 지방자치법 제65조의 위와같은 규정 때문에 헌법 제26조가 규정하는 청원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청원권을 인정하면서 그 자체에 어떠한 제한이나 한계를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청원권 행사의 절차나 조건을 정할 수 있을 뿐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5조는 반드시 모든 청원에 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게 함으

로써 본건과 같이 청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그 법에 “모든 지방의회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개없이도 청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다면 합리적인 청원절차를 규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왕시의 의원 9명 전원이 소개의원이 되어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헌법상의 청원권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26조 청원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그 청원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2월 6 일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변호사 박원순

헌법재판소 귀중